[모바일] 증권번호:

종신형 연금보험 무제한 비과세 적용 신청 확인서

	겨	약	· 人	항
_				_

증권(청약)번호		
보험상품명		
연금지급방법	연금개시나이	
계약자 성명	생년월일	

■ 계약자 본인은 종신형 연금보험 무제한 비과세 조건*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들었습니다.

종신형 연금보험 무제한 비과세 조건은 매우 엄격한 사후요건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.

10년 유지 후 비과세 목적 중도해지, 연금지급방법의 변경, 중도인출, 계약관계자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종신형 연금보험 무제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험기간을 10년이상 유지하여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.

이 경우 중도해지 또는 연금수령시 발생하는 보험차익(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 총액을 뺀 금액)과 다른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세법에서 정한 금융소득(현재 1인당 2천만원)을 초과한 경우최고 49.5%(현재)의 종합소득세(지방소득세 포함) 과세 위험과 소득 증대로 인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납입액 인상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.

- *종신형 연금보험 무제한 비과세 조건(단, 계약자가 개인이고 보험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에 한함)
- -종신형 연금보험 (2013.2.15 가입분 부터)
 - ①계약자=피보험자=수익자
 - ②연금개시연령이 만55세 이상이고 연금을 개시 후 해지 불가
 - ③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·수익 등을 지급 불가(연금개시전·후 중도인출 불가)
 - ④연금지급방법이 종신형(개인형)이고 보증기급기간이 통계청장 고시하는 기대여명 이내일 것
 - ⑤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이 [연금개시일현재 연금계좌 평가액/연금개시일 현재 기대여명 연수X3]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

상기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 및 확인하고 청약합니다.

계약자	성명:	전자서명	
법정대리인	성명:		
(친권자 또는 후견인)	성명:		
<법정대리인(친권자) 1인이 서명한 경우>			서명(인)
본인은 다른 법정대리인(친권자) 1인과 합의하에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.			

	01	
년	워	01
근	=	2

유안타증권 스마트센터 모바일 (인)